

2008. 10. 16(목)

제1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안 등 3건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배성한

## 【 목 차 】

1.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안 ..... 2
2.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안 14
3.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 28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 10. 0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8. 10. 07.

### 2. 제안이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1010비전 실천 및 우리 군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나. 기업사랑 및 환경조성에 관한 시책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0조)
  - 1) 기업사랑운동 추진 및 환경조성(안 제4조)
  - 2) 기업사랑 민간단체 지원(안 제5조)
  - 3) 최고경영인상 및 최고근로인상 시상(안 제6조, 제7조)
  - 4) 군정홍보매체 활용 기업홍보(안 제8조)
  - 5) 중요한 협약체결 시 군수실 등 편의제공(안 제9조)
  - 6) 기업애로상담관 지정·운영(안 제10조)

다.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시책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21조)

- 1) 유치기업이 공유재산 사용을 희망할 경우 우선 지원(안 제11조)
- 2) 산업시설용지 지원(안 제12조)
  -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 또는 장기대부
  - 개별공시지가로 재산평정, 대부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 3) 대부료 면제(안 제13조)
  - 원자재 100분의 60 이상을 관내에서 조달하여 공동 생산·전시·판매하는 경우에는 군의회 동의를 받아 면제
- 4) 대부료 이자지원(안 제14조)
  - 군이 조성한 산업시설용지 또는 공유재산인 공장용지, 임대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5년간 대부료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지원
- 5) 산업시설용지, 대부료 면제, 대부료 이자지원의 지원기준 규정(안 제15조)
- 6) 관내 기업제품 우선구매, 우수제품 발굴·홍보, 시장개척 등 판로지원(안 제16조).
- 7) 공산품전시관 설치·운영 (안 제17조)
- 8) 해외품질규격인정 컨설팅비용 일부 지원(안 제18조)
- 9) 국내 전시회(박람회) 참가비용 일부 지원(안 제19조)
- 10) 군 법률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안 제20조)
- 11) 신규산업단지 연접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안 제21조)

라.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시책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

- 1) 노동단체의 체육, 문화활동비용 일부지원(안 제22조)
- 2)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안 제23조)

### 3) 근로자 주거 지원(안 제24조)

- 군내 이주 근로자 주택매입 또는 전세 등 알선
- 10가구 이상 사원주택 집단건립 시 부지알선, 진입로 개설, 가로 등 설치 등 지원, 부지매입비 100분의 30 지원

마. 각종 보조금의 취소 및 반환 규정을 둠(안 제25조)

바. 보조금 집행은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함(안 제26조)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근로기준법」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 기술촉진법」 제15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22조, 제39조
-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조, 제4조, 제14조

나. 예산조치 :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33,640천원)

다. 입법예고(2008. 9. 4 ~ 9. 24)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 우리 군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타 시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보다 더 차별화되고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 현재 우리 군 경제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1010추진단에서 목적이 유사한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 기업의 신설, 이전, 증설 등 우리 군에 기업을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2개의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 어떤 혜택이 주어 질 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으므로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기존의 조례와 통합하여 1건의 조례로 관리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사료됨.

## 6. 참고자료

### ○ 관련법령 발췌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잡종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그 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한다.

제31조 (대부기간) ① 잡종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2. 제1호외의 재산 : 1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대부받은 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기간이 종료된 잡종재산에 대하여 제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를 할 수 있는 경우

제32조 (대부료) ①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제34조 (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 ①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사용료 면제)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④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12.30>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동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 (잡종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잡종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8.4.18>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때
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때
13.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부하는 때
1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때
15.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
16.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때
18.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에게 대부하는 때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5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실업대책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미취업자들이 창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때
2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때
2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의 사용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때



- 24.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 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 공간으로 대부하는 때

제30조 (대부기간)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때에는 50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때
-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내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대부하는 때
- 3. 제29조제1항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제31조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재산의 가격결정은 대부기간 중 연도마다 하되, 건물이 아닌 구조물 등으로서 경과연수 및 잔존가치율의 평가가 불가능한 재산의 경우에는 첫 해의 가격결정 후 5년 이내에는 가격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08.4.18>

- 1.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동일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하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35조 (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12.30>

- 1. 제2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잡종재산을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유재산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대부료 감면대상지역의 공유재산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장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12.7, 1996.7.19, 1997.7.10, 1999.8.9, 2003.6.30, 2008.2.29>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개정 2007.10.4>

② 사업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7.10.4, 2008.2.29>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이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준공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07.10.4>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미분양 토지 중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분양가격에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0.4>

##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 (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 (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 50퍼센트 이상을 군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12. 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전부를 수출하는 사업

-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 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07. 12. 17)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조성한 지방 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 ■ 「거창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함은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조대상)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안번호 제2008 - 40호>

#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 10. 0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8. 10. 07.

### 2. 제안이유

거창군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과 체결된 한국폴리텍Ⅶ대학 거창캠퍼스 무상 양도·양수에 관한 협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고, 승강기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승강기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발전을 위하여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을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나. 재산출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한국폴리텍Ⅶ대학 거창캠퍼스를 무상증여 조건에 따라 대학에 무상양도
  -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사업은 협약

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 대학은 군 출연재산에 대해 교육용 또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의 관리다. 대학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대학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 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 까지 군수에게 제출, 필요한 경우 수시 제출
- 마. 출연재산과 관련한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군비 출연과 관련한 운영상황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와 소속공무원의 검사 실시 등

#### 4. 법적근거

##### 가. 관계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7조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및 제40조

나. 예산조치 :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15억원)

다. 입법예고(2008. 9. 23 ~ 10. 2)결과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승강기산업 기술 인력의 교육, 훈련 등을 위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을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런데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 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 한국승강기 대학이라는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실체는 없고,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음.
- 그러므로 이 조례안은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거창군의 역점시책인 점을 감안하여 이 조례 시행일과 관련된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한 것을 “이 조례는 공포 후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조례를 수정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6. 참고자료

### ○ 관련법령 발취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제1호의 사업만을 말한다)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산업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및 양성
  2. 산업기술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3. 연구장비·시설·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촉진
  4.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의 촉진
  5.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
  6. 산업기술 저변의 확충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본다.

**제20조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2.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산·학 협력체제 중심의 공학 교육 개편 지원
4.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5.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 양성
6. 산업 현장 기술인력의 재교육

7.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8. 여성 기술인력의 양성 및 산업기술계의 진출 촉진
9.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연구장비·시설, 시험·평가장비 등(이하 "연구장비등"이라 한다) 연구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등을 지원 받은 주관기관과 주관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주관기관등"이라 한다)은 무상 또는 실비의 사용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기술혁신주체가 당해 연구장비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장비등의 연도별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을 지식경제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주관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등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당해 전문기관에 대하여 연구장비등의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재산권의 보호 및 지원
2. 품질 향상 및 품질 인증의 지원
3. 시험·평가기술의 개발 및 정밀도 향상의 지원
4. 기업·대학 및 연구소 간의 협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제31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법 제7조 및 이 영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3. 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4.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재단
5.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7.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8.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3조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법 제20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기술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
2.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운영
3.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취업 지원
4.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 (연구장비·시설 등의 활용촉진기관)**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단가 이상의 연구장비·시설, 시험·평가장비 등(이하 "연구장비등"이라 한다)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구입한 기관
2.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연구장비등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구입한 기관

## □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7.10.17>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4조 (학교의 설립등)** ①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③ 공·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7조 (교육재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 및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학교설립 등)**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5>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3.26, 2001.1.29, 2008.2.29, 2008.6.5>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6.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
7.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8. 교지·실습지의 지적도와 교사의 평면도
9. 개교예정일
10.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③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지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1. 폐지사유
2. 폐지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④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3.26, 2000.11.28>

⑤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1. 변경사유
2. 변경내용
3. 변경연월일

## □ 대학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05.3.25>

**제4조 (교사)** ①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②대학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중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한 교육기본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지원시설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대학이 그 필요에 따라 갖추어 수 있도록 하며,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현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의학·한의학 및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교열이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부속시설중 부속병원을 갖추어야 하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4.30, 2004.3.5, 2005.3.25>

③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의 면적은 별표 3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10.25,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학과 또는 학부에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중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을 합한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야간과정의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야간수업 대학원 학생정원을 제외한다.

⑤교수·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5>

**제5조 (교지)** ①교지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별표 4에 의한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에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을 각각 확보하여야 하되, 교지가 도로·하천등으로 부득이하게 분리되어 인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서 "교지"라 함은 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 <개정 2004.3.5>

**제6조 (교원)** ①대학(교육대학을 제외한다)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의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조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10.25,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생수를 말한다. <개정 2007.12.6>

1. 대학원이 없는 대학 : 대학의 학생정원

- 2. 대학원이 있는 대학 : 학사과정의 학생정원에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전문대학원의 경우는 학생정원의 2배)를 합한 학생수
- 3. 대학원 대학 : 대학원 학생정원의 2배의 학생수
- ③교육대학은 2학급까지는 학급마다 교원 4인을 확보하여야 하고, 2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1학급을 증가할 때마다 2인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에는 겸임교원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5분의 1(대학에 두는 전문대학원은 3분의 1),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3분의 1, 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둘 수 있으며, 겸임 및 초빙교원등에 관한 산정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4.30, 2005.3.25, 2006.6.7, 2007.12.6, 2008.2.29>

**제7조 (수익용기본재산)** ①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5>

- 1. 대학 100억원
- 2. 전문대학 70억원
- 3. 대학원 대학 40억원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별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는 것 이어야 한다. <개정 2004.3.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1.4.30, 2005.3.2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출자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장 공유재산 통칙

제4조 (공유재산의 범위) ①이 법에서 "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부잔교(부잔교)·부선거(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저작권·특허권·의장권·상표권·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및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②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한다.

②"행정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③"보존재산"이라 함은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그밖에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④"잡종재산"이라 함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8조 (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 제4장 잡종재산

### 제1절 통칙

**제28조 (관리 및 처분)** ①잡종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②잡종재산의 사권설정과 현물출자·대물변제 및 제29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에 관한 범위 및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계약의 방법)** 잡종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뜻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의 방법에 의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절 양여

**제40조 (양여)**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양여할 수 있다.

1.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안에 있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잡종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하는 때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있어서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때
4. 도시계획사업집행의 부담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 사업시행지구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여하는 때
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잡종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잡종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때에는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1조 (양여계약의 해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양수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양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양여한 경우에 양수자가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

2. 허위진술이나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의안번호 제2008 - 44호>

#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 10. 0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8. 10. 07.

## 2. 제안이유

- 현재 입주 가능한 공장부지가 부족한 실정에 있어 국농소 일반공업지역내의 미개발된 부지를 매입 공장부지로 조성함으로써 기업유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
- 2006년 1월 26일 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체계 구축을 위하여 조건부로 노동부와 경상남도 및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과 양도·양수에 관한 협약체결
- 한국폴리텍Ⅷ대학 거창캠퍼스를 승강기특성화대학으로 전환, 우리 군을 세계적인 승강기 랜드마크 도시로 육성·발전시키고자 함

### 3. 주요내용

####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재산명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물건 및 지	수량(m <sup>2</sup> )	공시지가	비고
계		45필지		105,597.97	14,042,525	
정장리 일반 공업단지 내 부지 매입	토지	거창읍 정장리 71-5번지 외 35필지	토지 (전25, 임야8,묘지2 , 하천1)	45,900	884,968	
한국폴리텍 Ⅷ대학 거창캠퍼스 양수	건물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412-1 외 2필지	본관 외 7동	17,882.97	7,063,390	양도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양수자 : 거창군
	토지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412-1번지 외 5필지	토지 (학교용지3, 임야 3)	41,815	6,094,167	

#### ○ 처분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재산명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물건 및 지	수량(m <sup>2</sup> )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비고
계		9필지		59,697.97	13,157,557	
한국폴리텍 Ⅷ대학 거창캠퍼스 양도	건물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412-1 외 2필지	본관 외 7동	17,882.97	7,063,390	양도자 : 거창군 양수자 : 학교법인 한국승강기 대학
	토지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412-1번지 외 5필지	토지 (학교용지3, 임야 3)	41,815	6,094,167	

### 4. 참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및 제14조

## 5. 검토의견

- 정장리 일반공업단지내 부지 매입안은 현재 추진 중인 거창일반산업단지 완공(2011. 12) 이전에 유치할 기업입지 확보를 위한 것으로 1010비전 실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정 투·융자심사는 2008. 10. 2. 받았음.
- 한국폴리텍Ⅶ대학 거창캠퍼스 양수·양도안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과 거창군과의 무상 양도·양수에 관한 협약서의 조건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승강기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6. 참고자료

### ○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②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0.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1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4. 이미 보유중인 부동산의 종물 또는 공작물의 대체설치
- ③제1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관리조례]

### 제 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 14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